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762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4. 04. 0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04. 19.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가. 폐지이유

- 아동·여성 관련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대상자별 구분되어 제정·시행되고 있어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폐지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복지지원과(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349호

가) 예고기간: 2024. 2. 23. ~ 2024. 3. 15.(21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아동과 여성 대상자별 구분·시행되고 있어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4. 19.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